

의안번호	제 4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3. (제 회)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7. 3. 3.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일자 : 1997. 3. 3.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15244호, 1996. 12. 31)됨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부서의 총무시간은 17시로 하고,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안 제13조)
- 나.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던것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을 연가일수에 가산토록 함.(안 제18조)
- 다. 연가는 오전·오후의 반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함.(안 제19조)
- 라. 질병·부상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안 제20조)
- 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안 제21조)
- 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고, 풍·수해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각각 “재직”으로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7조를 제25조의 2로하고, 그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삽입한다.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삽입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																																				
<신 설>	제16조의2(토요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무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재직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무기간</th><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4일</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0일</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3일</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6일</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9일</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2일</td></tr> <tr><td>6년이상</td><td>23일</td></tr> </tbody> </table>	근무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근무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																																					
.....																																					
.....																																					
.....																																					
.....																																					
.....																																					
.....																																					
.....																																					
②제1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의 신분 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현행	개정 (안)
<신설> 제19조(연가계획의 허가)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신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의 허가) ①·②(현행과 같음)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한다. ④·⑤(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생략) ②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 가하여야 한다. 1.~7.(생략)	제22조(공가) 1.~7.(현행과 같음) 8. <u>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u>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⑤(생략)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⑧(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⑤(현행과 같음) ⑥.....재직..재직.....재직..... ⑦~⑧(현행과 같음) ⑨ <u>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u>
<신 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 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30일.....
<신 설>	제25조의2(국외여행) 현행 제27조와 같음
<신 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겸직허가) 생략	제26조(겸직허가)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정치운동
제27조(국외여행) 생략	<삭 제>
제28조(정치적 행위) 생략	제27조(정치적 행위)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생략	제28조(시행규칙) 현행 제29조와 같음